

24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제5차) 정기공고

해외 현지 진출(예정)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산 권리 보호 및 지재산분쟁·침해 초동대응 지원을 위한 해외 지재산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개요

- 총괄 / 주관기관 :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사업목적
 - 해외 진출(예정) 중소기업¹⁾·중견기업²⁾ 대상으로 지재산 권리보호 및 해외기업과의 현지 분쟁·침해 초동대응 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 1)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예정)*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 사업 신청 시 대상제품 수출여부 항목은 지원희망국에 대한 수출 단계를 기준으로 입력하여야하며 수출단계 증빙에 지원희망국 관련 사항이 없는 경우 수출증빙 인정 불가(수출단계 판단기준은 5페이지 유의사항 참조)

지원대상국가 : 해외지식재산센터(10개소) 관할 총 40개 국가

해외 IP센터	북미 (LA)	미국 동부 (워싱턴)	동북아 (베이징)	중국 남부 (광저우)	일본 (도쿄)	유럽·러시아 (프랑크푸르트)	동남아 동부 (호치민)	동남아 서부 (방콕)	서남아·중동 (뉴델리)	중남미 (멕시코시티)
지원국가 (40개국)	미국 서부, 캐나다 등	미국 동부	중국 북부, 몽골 등	중국 남부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이탈리아, 튀르키예,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베트남,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UAE, 사우디, 카자흐스탄, 이집트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2개국		3개국		1개국	10개국	5개국	5개국	7개국	7개국

2. 지원내용

- 세부 유형별 지원내용
 - 권리보호 지원
 - 현지에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시 발생 비용 및 절차 지원 (기 출원 건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PCT·마드리드·헤이그 국제단계 지원은 불가하나 개별국 진입단계는 지원 가능)
 - * 상표·디자인은 1국가·1표장·1상품류를 1건으로 취급하며 국가, 표장, 상품류 추가 시 각각 개별 신청 필요(첨부된 니스(상표)/로카르노(디자인) 분류표를 참조하여 상품류 및 지정상품 지정 필수)
 - ** 특허출원 신청 시 지원 희망국가 언어/법적요건을 갖춘 명세서 제출 필수
 - 해외세관 지재산 등록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지원한도(건 최대)		정부지원비율	비고
권리보호	□ 특허·상표·디자인출원 비용지원 해외 40개국에 출원하는 해외 현지 특허·상표·디자인출원 비용 중 일부 지원(관납료 포함)	특허	\$3,000*	(중소) 50% (중견) 50%	연간 10건/1사, 총 \$5,000 한도
		상표, 디자인	\$1,500*		
	□ 해외세관 지재산 등록 지원				

* 권역·국가별 건당 정부지원금 지원 한도 상이(붙임1 참조)
(지원한도는 총 계약금액이 \$6,000일 때 50%인 \$3,000불까지 지원을 의미)

○ 분쟁·침해 초동대응 지원

- (지재권침해피해)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 침해 증거 확보*, 지재권 침해물품 제조·유통 현황 확인 등을 위한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구제 비용 지원
- * 경고장·소송 제기 목적인 경우 지재권분쟁 유형 신청 필요
- (지재권분쟁) 지재권 분쟁 시 현지 로펌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불필요한 소송 예방을 위한 법률의견서, 감정서(FTO 등) 등 작성·검토지원
- (기타 지재권이슈 대응) 해외 현지 기업과의 지재권 관련 계약 서류 작성 및 검토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지원한도(건 최대)	정부지원비율	비고
분쟁·침해 초동대응	□ (지재권침해피해) 현지 지재권 피침해 실태조사(기본), 행정단속(추가)에 따른 비용 및 제반 절차 지원 □ (지재권분쟁) 경쟁사 분쟁성향, 분쟁대상관리·제품 심층 분석, 신규 네이밍(상표) 전략 등 지원 □ (기타 지재권이슈 대응) 비밀유지협약서(NDA), 합의서, 라이선스 계약 등 작성 및 검토 지원	\$10,000	(중소) 70% (중견) 50%	▶연간 2건"/1社, 총 \$20,000 한도 ▶침해실태 조사만 진행시 \$6,000 한도 ▶행정단속만 단독 지원은 불가

* 동일사항(동일제품·권리의 동일내용·분쟁상대방 등)으로는 반복 지원 불가

○ 심층 법률자문 지원(무료)

- 지재권 법률 검토, 권리 피침해 여부, 소송 및 라이선스 체결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층 자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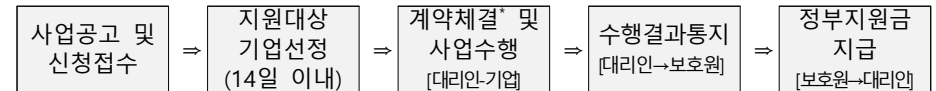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한도(건 최대)	정부지원비율	비고
법률자문	□ 기초상담 이후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심층자문 제공	전액지원 (중소·중견 100%) * 단, 연5회를 초과하여 자문 요청시 타기업 우선 지원		▶IP센터 전문가 및 자문로펌이 지원

□ 수행대리인 선정방법

- 기업이 직접 수행대리인 POOL(별첨1, 시스템 참조)* 내 해당국가 수행대리인과 업무수행여부, 비용견적 등 세부사항 협의(필수)**
- * 수행대리인POOL 외 대리인과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원 문의
- ** 직접 문의가 어려운 경우 해외IP센터(붙임2)에 수행대리인 정보 문의 가능
- 기업과 수행대리인 간 상기 비용견적 등 협의가 완료되면 해외 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에서 사업신청 시 해당 수행대리인을 지정
- 수행대리인 POOL에 등록되지 않은 수행대리인과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신청 전에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로 개별 문의 요망
- * 별도의 절차(대리인등록신청서 제출)를 거쳐 수행대리인 POOL에 등록

□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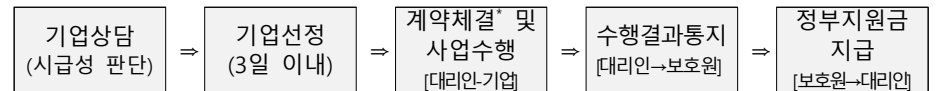
- (정기모집) 권리보호, 분쟁·침해 초동대응 공통 적용



* 지원기업은 수행대리인과 계약 체결시 수행대리인에 기업부담금 입금(증빙자료 개별 제출) (계약시점에서 기업부담금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수행대리인의 요구 보증금으로 대체 가능)

- (수시모집) 분쟁·침해 초동대응이 시급한 사항(패스트트랙 적용)

-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또는 해외IP센터가 기업과 상담을 통해 시급성을 우선 판단하고,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지원기업은 수행대리인과 계약 체결시 수행대리인에 기업부담금 입금(증빙자료 개별 제출) (계약시점에서 기업부담금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수행대리인의 요구 보증금으로 대체 가능)

- 심층법률 자문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또는 해외IP센터에 유선으로 직접 신청접수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모집

- 신청 기간 : '24. 7. 1.(월) ~ 7. 19.(금) 18:00
* 마감 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인정됨
- 결과 통보 : 모집 완료 후 14일 이내(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시모집(패스트트랙, 분쟁·침해 초동대응유형만 신청가능)

- 신청 기간 : 상시*
* 반드시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또는 해외IP센터와 우선 상담을 통하여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 가능
- 결과 통보 : 접수 후 3일 이내(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정기모집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www.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 수시모집을 신청하는 경우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1600-9099) 또는 해외IP센터(붙임2 참조)*와 반드시 사전 상담 필요

<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 2개 이상의 국가·권리에 대한 출원지원 신청 등의 경우 시스템 상에서 반드시 각각의 권리·국가별로 신청 필요(1개의 신청서에 국가·표장·상품류 미기재 또는 복수 기재 시 불선정)
- 선정 이후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희망국가/상품류* 변경은 불가하나 지정상품은 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수출단계 판단기준
 - 수출 중 : 지원희망국이 표기된 수출실적증명서·수출신고필증, 지원희망국 내 지사 운영, 지원희망국 온·오프라인 판매내역 및 셀러 자격, 지원희망국 판매 인보이스 등이 증빙 가능한 경우
 - 수출 계획·준비 중 : 지원희망국 수출 계획서, 지원희망국 전시회 참가, 영문/희망국 언어로 작성된 브로슈어, 지원희망국 내 지재권 출원·등록, 지원희망국 수출을 위한 국내·외 기업과의 업무협약자료(이메일 등) 등이 증빙 가능한 경우
 - 수출 계획 없음 : 수출 중 또는 수출 계획·준비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인정된 경우

[정기모집 시 기업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기업 제출서류	1.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및 사업 신청서 * 회사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지원일자 표기 필수	○		신청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2.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 유효기간 확인 필수('24.4.1 이후)	○		
	3. 사업자등록증(명원)	○		
	4. 지원희망국에 대한 직접 수출 또는 간접적인 수출계획·준비 증빙 자료	○		
	5. 해외출원 희망 지재권이 국내 선출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의 등록증(원부) 또는 출원증명원(공고)/ 해외등록권리 증빙		○	
	6. 국제납세증명서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7. 지방세납세증명서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8. 사업 신청 유형 관련 증빙자료 * 현지 위조상품 유통현황, 지재권침해 증빙, 경고장· 소장, 지원 희망국가 언어/법적요건을 갖춘 특허 명세서, 지재권 관련 계약서 작성·갱신 요청 등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여러 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4. 세부운영계획

□ 선정기준 및 선정평가 결과

- (선정기준) 내·외부 심사위원*이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모집 회차별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기업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
* 수시모집의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내부 심사위원으로 심사 진행
** 선정심사기준 : 붙임3 참조
- (결과확인) 회원정보에 기재된 이메일로 심사결과 통보하며 해외 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 상의 '지원기업 계약관리'에서도 확인 가능

□ 지원기업-수행대리인 간 계약 체결

- 지원기업은 선정결과 발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수행대리인과 계약체결 실시(일정 도과 예상 시 반드시 보호원으로 연락 필요)

- 지원기업과 수행대리인은 **계약 조건***, **계약 기간**** 및 **과제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

* 출원 요청 건수, 행정단속 포함여부 및 최종결과물 구성 등

** 계약일로부터 최대 3개월

- 지원기업은 수행대리인과 계약서 날인 및 기업부담금을 수행대리인에게 입금(정해진 기한 내 미납부시 선정 취소 가능)

- 지원기업은 계약 체결 이후 지원사업 시스템에 계약서 사본 및 기업부담금 입금 증빙자료 업로드(별도 안내 메일 발송 예정)

□ 사업결과 확인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수행대리인이 사업수행 완료* 시 지원기업 및 보호원에 통지하고, 보호원은 사업결과 내용을 확인 후 수행대리인에게 정부지원금 지급
- * 지원기업에서 미동의 시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부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 수행대리인은 반드시 지원기업 선정 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업 완료 필요(미완료 시 정부지원금 지급 불가)

□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이후라도 지원제한 조건 사유 해당, 신청요건 위반 사항, 기타 심각한 신의성실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지원 거절 가능

□ 문의처

- 대표번호/이메일 : 1600-9099, ipcenter_help@koipa.re.kr

붙임 1. 국가별 지원한도

1. 해외IP센터 연락처
2. 선정심사 기준
3. 지원제한 조건

별첨 1. 수행대리인POOL 리스트(별도파일)

1. 니스, 로카르노 분류표

붙임1

권역·국가별 지원한도

권역	국가	지원한도(USD), 건당		
		상표	디자인	특허
북미	미국	700	1500	2500
	캐나다			
중남미	멕시코	400	450	750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동북아	일본	500	500	1500
	중국	300	300	1000
	(마카오)			
	대만	650	650	1200
	(홍콩)			
	몽골	500	800	1300
동남아/오세아니아	베트남	300	500	1500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450	450	1500
	싱가포르			
	호주			
서남아/중동	뉴질랜드	500	1500	2000
	인도	300	200	1500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집트	1000	1000	3000
	UAE			
	사우디			
	독일			
유럽	러시아	1000	600	2500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튀르키예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유럽통합			

붙임2

해외IP센터별 연락처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북미IP센터 (로스앤젤레스)	+1-323-424-4005	la_ipcenter@koipa.re.kr
미국동부IP센터 (워싱턴 D.C.)	+1-312-909-6567	washington_ipcenter@koipa.re.kr
동북아IP센터 (베이징)	+86-134-8885-0387	beijing_ipcenter@koipa.re.kr
중국남부IP센터 (광저우)	+86-20-2208-1603	guangzhou_ipcenter@koipa.re.kr
일본IP센터 (도쿄)	+81-3-6362-0500	tokyo_ipcenter@koipa.re.kr
유럽·러시아IP센터 (프랑크푸르트)	+49-69-2429-9299	frankfurt_ipcenter@koipa.re.kr
동남아동부IP센터 (호치민)	02-6250-0868	hochiminh_ipcenter@koipa.re.kr
동남아서부IP센터 (방콕)	+66-2-35-1558	bangkok_ipcenter@koipa.re.kr
서남아·중동IP센터 (뉴델리)	+91-11-4230-6300(312)	newdelhi_ipcenter@koipa.re.kr
중남미IP센터 (멕시코시티)	+52-55-5514-3173(728)	mexicocity_ipcenter@koipa.re.kr

붙임3

선정 심사기준

□ (1단계) 지원기업 적격여부 사전심사 → 미충족시 지원대상 탈락

- 수출 또는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 지원 제한조건(별첨2 참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연도 최대 지원 건수 범위 이내일 것

□ (2단계) 지원기업 선정평가 기준 → 고득점순 우선 지원대상 선정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평가기준 및 점수
기업규모	중소, 중견 기업 구분	20	(소기업) 20점, (중기업) 15점, (중견기업) 10점
지원 항목	지원 신청 배경 및 항목	25	■ 분쟁침해 초동대응 지원 : 15~25점 - 해외 IP침해분쟁(경고장 접수, 침해피해 등) 대응 법률서비스 : 25점 - 해외 IP침해분쟁 예방 법률서비스 : 20점 - 해외 수출 관련 법률서비스(라이선스 계약, NDA, 지재산권 관련 내용 검토 등) : 15점 ■ 해외 지재산권 보호 지원 : 5~15점 (세관 등록 15, 상표·디자인 10, 특허 5)
수출 기여	실제 수출 여부, 수출 계획의 구체성 등	15	- 법률서비스 신청국가에 대한 해외 현지 수출 실적이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 : 15점 - 수출 실적이 명확하지 않으나 수출 예정이거나 수출계획이 구체적인 경우 : 10점 - 수출실적도 명확하지 않고, 수출여부도 불명확한 경우 : 0점
최근 수혜 여부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수혜 이력	20	- 신청연도 및 직전 2년 이상 해외IP센터 지원(법률서비스, 출원) 실적이 없는 경우 : 20점 - 신청연도 및 직전연도에 해외IP센터 지원(법률서비스, 출원)실적이 없는 경우 : 10점 - 신청연도에 해외IP센터 지원실적이 없고, 그전에 지원실적이 있는 경우 : 0점
지원 필요성	지원시 경제적 효과 등 높고,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20	정성적 평가 : S(20), A(15), B(10), C(5)
총 계		100	

※ '심층 법률자문'은 '(1단계) 지원기업 적격여부 사전심사'만 통과하면 신청순으로 모두 지원. 다만, 신청이 많은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이 지연될 수 있음

지원제한 조건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단, 금융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할 수 있다.
- 분쟁 대상 해외기업이 한국기업이거나 한국 국적의 개인인 경우
- 분쟁 대상 해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한국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지점·사무소(이하 ‘한국기업 지사’라 함) 또는 투자지분이 높은 법인인 경우
-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신청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 사업 지원으로 한국기업 또는 한국기업 지사가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기타 지원사업이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신청 기업이 타인의 상표, 특허 또는 서비스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다만, 타인과 신청 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제외함
- 종전(최근 3년)에 지원받은 사항과 동일 사안의 신청인 경우